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5-1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 발생할 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
-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근거마련 (안 제4조 ~ 안 제5조)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및 관리 (안 제6조 ~ 안 제7조)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용방법 교육 홍보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등촌2동 512-1) 강서구의회
(전화 : 2600-1807, 팩스 : 2600-1840)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자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 등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관내 초·중·고등학생
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응급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인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건물” 인증 표지판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두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용방법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